제규정 관리 규정

제정 2020. 1. 6. (규정 제28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규정(규칙과 지침 포함)의 체계와 그 제정, 개폐,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규정”이라 함은 문화원의 기본조직, 중요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문화원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규칙”이라 함은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.

3. “지침”이라 함은 규정, 규칙 이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기준 또는 예규적 성격의 업무수행절차 등 사무처리의 준거적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규정화) 각 부서는 소관업무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.

제4조(효력의 순위) ①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규칙은 규정에, 지침은 규정 및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동순위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.

제5조(제정형식) ①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목적

2.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

3. 적용범위

4. 각 조문의 명칭

5. 시행일자

②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, 절, 조, 항, 호의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,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.

3.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.

4.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되 전달이 곤란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.

제6조(제정절차)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규정의 제정,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ㆍ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2. 규정을 제외한 규칙, 지침 등의 제정, 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.

제7조(규정의 해석) 규정의 적용, 집행,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.

제8조(규정관리) 규정ㆍ규칙 및 지침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.

부 칙 (2020. 1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